

58-1 Presbytery Minutes (Special Meeting, Jul. 23rd. 2018)

- ▶ 말씀과 기도
- ▶ 환영과 인사 : 노회장의 환영 인사가 있고, 노회원들이 상호 인사하였다.
- ▶ 회원 점명 : 부서기 김정숙 목사가 회원을 점명하니, 목사 19명, 장로 4명, 그리고 3당 회 이상이 모여 정족수가 됨을 보고하다.

- ▶ 개회 선언 : 정족수 확인 후 노회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 회순 채택 : 다음의 회순을 받기로 하다.

19:30 1. 말씀과 기도(The Ward and Prayer)

인도 및 말씀 : 남윤상 목사

기도 : 박종우 장로

16:00 2. 환영 및 인사(Welcome & Greetings) – 노회장 조은상 목사(Moderator)

16:10 3. 회원 점명(Enrollment) – 부서기(Associate Clerk)

16:15 4. 회순 채택(Adoption of Docket) – 노회장 조은상 목사

16:20 5. 회의록 통과(Minutes Approval) – 노회장 조은상 목사

16:25 6. Board of Pension Time – 캐롤전 여사

16:50 7. 총회 총대보고(Report of GA Commissioner) – 김형순 장로

17:00 8. 서기 보고

17:10 9. 회계 보고

17:20 10. 특별위원회 보고(Special Committees)

- 웨잇빌 한인장로교회
- 매릴랜드 장로교회
- 워싱턴 소망교회
- 55-1차 임시노회 결의사항 재추인

안건토의

· 헌의안

11. 광고

17:55 12. 폐회(Adjournment)

18:00 13. 축도:노회장

▶ 회의록 통과 : 문서로 받기로 하다.

▶ Board of Pension의 캐롤전 여사가 Pension안내 및 교육을 하다.

▶ 총회 총대보고 : 김형순 장로가 보고를 하다.

▶ 서기 보고 : 사무총장 강기석 목사가 보고를 하니, 누락 서류는 별도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받기로 하다.

▶ 회계 보고 : 회계 김형순 장로가 보고를 하니, 받기로 하다.

▶ 특별위원회 보고 :

· 매릴랜드 장로교회 - 목회위원장 조명철 목사가, 임낙길 목사의 임시목사 사임(1월~6월)을 보고하고, 박관준 목사를 새 임시목사로 1년간 파송하기로 한 목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추인을 요청하니, 받기로 하다. 매릴랜드 장로교회의 행정위원 교체를,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내규를 잠정 유한하고 조명철목사로 하기로 결의하다.

· 웨잇빌 한인장로교회 - 목회위원장 조명철 목사가 보고한, 웨잇빌 장로교회와 이정남 목사와의 관계 해소에 관한 건에 대해서, 관계해소를 결의하다. 김성웅 목사의 임시목사 파송의 건을 추인하다. 임기는 6개월이며, 추후 연장에 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보고하다. 임시목사는 성례전과 설교에 관한 권한을 갖으며, 임시당회장은 목회위원장이 맡기로 보고하다. 단 정기당회의 인도는 임시목사인 김성웅목사에게 위임하고, 당회의 결의사항은 목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다.

· 워싱턴소망교회 - 사무총장 강기석 목사가 보고하니, 보고는 받기로 하고 헌의안은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다.

▶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정회하다.

▶ 속회 기도 : 최병호 목사

미국장로교(PCUASA) 미국장로교 대서양 한미노회 내규

대서양 한미노회(AKAP) 내규

제 1 조 총칙

미국 장로교 중대서양 대회(The Synod of Mid-Atlantic, PCUSA) 에 속한 본 대서양 한미노회(American Korean Atlantic Presbytery) 는 규례서(Book of Order) 에 따라 모든 사역을 원활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규를 둔다.

제 2 조 구성

노회의 구성은 중대서양대회에 속해 있는 교회로 구성하되 상회의 허락을 받아 그 외의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도 회원으로 받을 수 있다

제 3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규례서가 규정한 대로 하되 만일 교회가 총대로 파송한 교역장로(Teaching Elder, 이하 목사)와 사역장로(Ruling Elder, 이하 장로) 회원 간의 수적인 불균형이 생기면 노회는 F1-0403 과 G-3.0103(G-11.0101b) 에 의해 균형을 맞추지 않은 해당 교회에 장로를 추가로 선출해서 보내도록요청하며, 노회장과 노회의 임원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로와 운영위원회에 At-Large 로 선출된 장로는 그 직책의 임기 동안 자동적으로 노회 회원으로 등록된다.

제 4 조 직원 및 임무

각 직원의 임무는 규례서가 정하는 대로 한다.

1. **노회의 임원**은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로 한다
2. 서기,부서기,회계를 제외한 노회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매년 마지막 정기노회에서 공천위원회의공천을 받아 노회 출석 과반 이상의 투표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1 년이다.
3. **노회장**: 노회장은 전 년도의 마지막 정기 노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된다.

- ▶ 운영위원회에서, "워싱턴소망교회에 회에 관한 Review Committee의 Recommendation 의 사항을 워싱턴소망교회에서 12월 정기노회 때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Review Committee가 다시 보고하기로 한다. 필요시 12월 정기노회에서 헌의안을 다시 다루기로 한다"고 결의하여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 ▶ 55-1차 임시노회 결의사항에 관한 재추인의 건. - 최병호 목사가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55-1차 임시노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재추인할것을 동의하니, 재청후 55-1차 임시노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 재추인하기로 결의하다.
- ▶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규 7조의 잠정 수정에 관한 안건을 회원 2/3의 찬성으로 다루기로 결의하다.
-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임원 및 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잠정 수정하여, 회기내에 적용하기로 결의하다.

11. 광고 :

NCKP 총회의 개최에 관한 광고(올랜드)

최병호 목사의 NCKP 부회장 선출에 관한 광고

박종호 장로의 총회사법상임위원회에 선임에 관한 광고

자매노회인 용천노회의 방문에 관한 광고

장소 제공 및 식사 대접을 한 웨잇빌 장로교회에 대한 감사.

12. 폐회 - 폐회동의와 제청을 받아 노회장 폐회 선언을 하다.

13. 축도 - 노회장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임기가 끝난 이듬해에는 목회위원장으로 봉사한다.

4. **노회장의 임무 및 자격:** 노회장은 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진행하되 회의를 바르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질서를 유지 하는 의무를 가진다. 노회장이 목사가 될 경우에는 담임목사이여야 한다.

5. **부노회장:** 부노회장은 노회장의 선거와 동시에 선출하며 노회장을 보좌한다..

6. **서기(Stated Clerk)** 는 사무총장이 겸임한다. 노회의 모든 서류의 수신, 발신 및 유지 보관하며, 규례서의 법규 해석을 통하여 노회가 법을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

7. **부서기(Associate Stated Clerk):** 서기를 보좌 및 대행하며 본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을 담당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재선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본회에 인준을 받는다 .

8. **회계및 감사:** 노회의 전년도 마지막 정기노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 년이고 재선될 수 있다. 회계는 노회 재단 이사회의 투표권이 없는 이사가 되며 재단의 임원으로서 노회의 모든 자금,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모든 자금의 완전한 기록을 유지하며, 노회의 각 회의 때마다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규례서에 명시 된 대로 감사를 필하며 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필한 노회의 모든 계정 및 기금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당좌 수표 및 기타 채무증서는 회계나 재단이사회가 지정한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9. 임원 중 공석이 생길 때에는 공천 위원회의 공천에 의해 노회에서 선거로 선출하되 노회가 열리기전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실무는 당당케 한다.

10. 노회안에 지역적인 이유로 남부지역 교회들을 위해 노회안에 남부지역노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직원을 두어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재산과 법적인 문제는 공동관리하며 운영위원회, 이사회, 사법위원회, 기타 노회 공동의 사역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함께한다.

제 5 조 노회행정직원

1 사무총장/서기: 본 노회는 유급 사무총장을 둔다. 노회 사무총장/서기의 임무는 G-3.0104, G-3.0110, G-9.0701 에 따른다. 노회 사무총장/서기의 임기는 5 년이며, 중임될 수 있다. 노회 사무총장/서기의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매년 노회가 결정한다. 기타 미비 사항은 총회 및 중대서양 대회의 인사 규정서(Personal Policy) 에 준하여 실시한다.

2 기타직원: 노회는 필요에 따라 노회가 규정하는 임기와 의무를 가지는 기타 행정 및 프로그램 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 그 직원들은 노회의 기타 직원으로 간주되며 사무총장/서기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 6 조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정기노회: 노회는 년 2 회 4 월 첫째주 월요일, 12 월 첫째주 월요일 모이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임시노회: 상회의 지시나 운영위원회의 결정 혹은 노회원 3/1 이상의 서면요청에 의해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소집한다.

3. 노회성수: 회의성수는 목사회원과, 교회가 다른 장로회원 3 명이상으로 한다.

4. 의결방법: 모든 노회의 결정은 재산문제나 교단과의 관계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는 2/3 이상으로 하며, 그외의 결정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7 조 각 위원회 및 임무

1 규례서 G-3. 0109 에 의거하여 목회위원회, 대표위원회, 후보생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 및 교회개발위원회, 상임사법위원회, 이사회, 공천위원회, 재정위원회를 상임 위원회(Permanent Committee) 로 두며 필요에 따라 행정전권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속위원회(subcommittee) 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임무는 규례서가 정하는 대로다.

3 각 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과반이 되지 않을 경우 본 노회에서 추인받을 수 있다.

4 운영위원회(Council): 운영위원장은 현 노회장이며, 노회의 의사 진행 순서를 작성하고, 의사소통 및 제반 협조를 촉진하며 기타 치리 기관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통상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목사와 평신도 대표의 비율은 헌법이 규정하는 수에 가깝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노회는 비회기중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결의할 책임을 운영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다. 회의는 가능한 정기 노회 2 주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목회위원회는 규례서 G-2. 05 부터 G-2.010 에 의거하여 교회와 목사에 관한 모든 총체적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대표위원회는 규례서 F-1.0403 에 명시한 다양성속의 일치와 각 교회간의 균형잡힌 대표성을 실천하는 일을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권고 사항을 다음 노회에 반영한다.

7 교육위원회는 노회원들의 교육(Book of Order, Sexual Misconduct 등)을 기획하고 준비하여 실행한다.

8 후보생위원회는 규례서 G-2. 06 에 명시한 후보생들의 목회준비를 돕는 일을 한다.

9 선교 및 교회개발위원회는 노회 성장과 선교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10 공천위원회는 노회원을 각 위원회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공천하며 공천위원 3 년조와 공천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노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11 재정위원회는 노회의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 예산을 세우며,재정을 관리한다.

12 본회와 회원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인 것과 동성애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을 경우 성경과 신앙양심에 따라 결혼예식과 건물사용을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

제 8 조 상회비 (Per Capita) (신설)

1 각 지교회는 노회에 제출한 활동교인 수대로 계산하여 산정된 상회비를 회기내에 완납해야 한다.

2 각 지교회는 상회비의 50%를 선교비로 회기내에 완납해야 한다. 4

3 상회비를 미납한 교회는 모든 청원서류접수와 행정서비스를 상회비를 완납할 때까지 보류한다.

4. 노회는 대회와 총회에 정해진 상회비를 납부한다.

제 9 조 산하 선교회

1 노회 산하에 필요에 따라 선교회를 둔다.

2 남녀선교회연합회: 지 교회에서 파송하는 남, 여선교 회원으로 구성하되 그 업무는 1) 노회 산하 지 교회의 남녀 선교회 발전을 지원하며, 2)지 교회 남녀 선교회의 연합 활동을 수행하며, 3)관련 기관(KPC, KPW, NCKPC, NKPW, Presbyterian Men and Women 등)의 선교회 활동에 참여 및 대표를 파송하며, 4)남녀 선교회 연합회의 회칙에 따른 제반 조직과 업무를 자치적으로 수행하고, 정기노회에서 활동을 보고한다.

제 10 조 목사

1. 본 노회에 소속한 모든 회원 목사는 본 노회가 정한 모든 회의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담임 목사는 정기노회를 위하여 개 교회 집회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2. 목사의 회원권, 가입 및 이명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장로교 헌법에 따른다. 타 교단에서 본 노회로 전입하는 목사는 헌법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필요하면 목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과목도 이수해야 한다.)

제 11 조 당회

1. 총대: 각 당회는 노회에 출석할 1 인의 총대 장로를 선출한다. 단 활동 교인수가 501 명이 초과할 경우 G- 11.0101 에 따라 총대 수를 정한다.

2. 상회보고: 각 당회는 노회 서기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례 보고를 해야 한다.

- 1) 총회가 마련한 양식에 따른 통계보고
 - 2) 매년 1 월말까지 목회 위원회를 거쳐 해당 목사의 청빙 계약서 만료 또는 목사의 사례 및 직원의 봉급 등을 검토하여 교회 1 년 예산에 반영시킨 예산서를 목회위원회에 제출한다.
 - 3) 당회장은 매년 당회 서기, 선교위원장, 회계 장로, 및 노회 파송 대표의 명단과 주소를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새로 임직되어 안수를 받는 장로는 노회가 실시하는 헌법교육을 마치고 노회의 고시와 면담을 거친 후 각 교회에 임직한다.

제 12 조 지교회

1. 선교연구 (Mission Study): 각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또는 노회가 지시할 시, 지 교회의 총괄적 선교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공석교회: 목사가 공석이거나 공석 예정일 때 당회는 노회의 목회위원회와 협의하여 규례서에 의거하여 인정하는 목사를 청빙해야 한다.
3. 재정 의무: 노회는 자립 교회이든 미 자립 교회이든 노회에 소속한 교회가 선임 목사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후임 목사의 부임을 허락하지 않는다.
4. 최저생활비: 교회는 매년 노회가 결정한 최저 기준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5. 교회는 교회 내의 모든 유급 목사들을 위해서 목사 사례비 중 월급과 주택비를 합한 액수에 준하여 교단이 정한 액수를 교단 은급 재단에 매년 지불해야 한다.
6. 교역자를 포함한 유급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불하지 못한 교회는 청빙 및 채용 계약을 어긴 교회로 간주한다.
7. 공석 의무금 (Vacancy due): 교회는 목사가 공석이 된 경우 그 기간에도 계속 은급 할당액을 지불해야 한다.
8. 보험: 모든 교회는 교회 재산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9. 재산이전: 교회가 부동산의 처분, 대여, 취득, 또는 차용할 때는 당회 (와 공동의회) 를 거쳐 규례서 G-8.0200, G-8.0501 에 따라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의 매매 또는 허가를 청원할 경우 지 교회가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기는 이 청원서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이관한다.

11. 교회 내규 검토: 교회가 내규를 만들거나 개정할 경우 그 사본을 노회에 제출하고 목회 위원회가 이를 검토한다. 모든 교회 및 관계 법인체는 법인체 설립규정 및 내규의 사본 1 부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총회와 대회 총대 및 상회의 위원회 위원 파송

1. 총회 총대: 총회 총대는 총회규정에 따른다.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는 각각 공천 위원회의 공천에 의해 비밀 투표로 정하며 청소년 자문 대표 수는 총회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2. 대회 총대: 목사 장로 동수로 하되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해서 선출하며 1 년간 총대로 봉사한다.

제 14 조 법인등록 및 법인 이사

1. 법인 등록: 정치 형태 제 7 장에 의거 이 노회는 미국장로교 대서양한미노회로 델라웨어 주법의 법인체로 등록한다.

2. 등록 대행자: 노회의 서기는 델라웨어의 일반 비영리 법인이 요청하는 법인 등록 대행인이 된다. 법인체의 법적 주소는 노회 사무실 주소와 동일해야 한다.

3. 법인 이사의 책임

1)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수령, 저장, 관리 및 이전 등기를 한다.

2)각 교회의 대부, 자산구입, 매매에 관한 요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며 이런 일들은 모두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전문인 감사의 보고 및 건의안을 검토하여 노회에 그 보고 및 건의안의 수락 여부 또는 채택을 건의한다.

4)델라웨어 주법과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서 노회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민사 사건에 대해 관리한다.

4. 법인 이사 회원: 공천 위원회는 6 명의 위원을 공천한다. 이사회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서기가 선거권 없이 이사회에 서기가 되며 회계는 선거권 없는 위원이 된다.

제 15 조 규칙 개정

1. 본 규칙은 정기노회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규칙 개정은 차기 노회 때에 결정한다.

2. 노회가 필요에 의하여 본 규칙을 임시 변경 할 때에는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그 회기에만 임시 잠정할 수 있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연구하여 차기노회 혹은 그 다음 노회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 부칙

1. 규칙은 통과 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기타 미비사항은 만국 통상 회의법(Robert's Rule) 에 준한다.

Adopted in July 31, 2001 by the authorization of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Revised in December 9, 2003 at the 20th Stated Presbytery Meeting Revised in December 14, 2010 at the 41th Stated Presbytery Meeting.

Revised in December 6, 2012 at the 46th Stated Presbytery Meeting

Revised in April 3, 2018 at the 58th. Stated Presbytery Meeting.